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2170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민건

소송복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D과 피고 사이에 부산 기장군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2020. 2. 20. 한 재산분할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20. 3. 5. 접수 제24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D에게 2018. 12. 21.부터 2019. 3. 22. 사이에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위 D은 2020. 2. 20.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0. 3. 5. 접수 제248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D과 피고 사이의 위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이혼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분할로서 취득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나 혼인기간 등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이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채무초과 여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인 D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6. 5.경 D과 혼인한 뒤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둔 점, ② D은 원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잦은 외도를 저지르고 피고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D과 피고의 사이가 악화되었던 점, ③ 원고는 피고와 D이 실제로 이혼한 것이 아니라 가장이혼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3~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와 D은 2020. 3. 2. 실제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④ 피고는 2018. 9. 3.부터 2018. 9. 12. 사이에 D에게 합계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의 채권최고액 합계 2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 피고가 위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와 D의 혼인기간이 적지 않고 피고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호